

구미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년월일 : 2001. .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회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실시토록 됨에 따라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와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조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매년 제1차 정례회 회기내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회기내 실시토록 함.
-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“7월 8월”에서 “9월 10월”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조정함
-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“12월 8일”에서 “12월 1일”로 조정함.

3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, 제19조의4

구미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구미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호중 “7월 8월”을 “9월 10월”로 하고 동조 제2호중 “12월 8일”을 “12월 1일”로 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심의)제1차 정례회에서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

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실시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 한다

부 칙

①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2001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은 12월 6일로 한다

②(다른조례의 개정)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중 “제1차 정례회”를 “제2차 정례회”로 한다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집회)영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. 다만,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. 1.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13일에 집회한다. 다만,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 8일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8일에 집회한다.	제4조(집회) . 1.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13일에 집회한다. 다만,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10일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1일에 집회한다.
제5조(심의)제1차 정례회에서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실시와	제5조(심의)제1차 정례회에서 법 제125
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	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
및 기타 의회의 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	타의회의 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
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18조의 규정	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제1항의
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	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실시와 법 제118
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 한다.	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
	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 한다.